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902

발의연월일: 2021. 10. 21.

발 의 자 : 임호선 · 오영환 · 강선우

박용진 • 박재호 • 이용호

이수진 · 강병원 · 이형석

고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고 짧은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업무수행 중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법 집행이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함.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에서는 소방 공무원이 제16조제1항(소방행위)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소방활

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 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 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 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 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 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